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99
----------	-------

발의연월일 : 2021. 8. 4.

발 의 자 : 이낙연 · 허종식 · 윤영찬
이병훈 · 박 정 · 박광온
윤재갑 · 홍성국 · 설 훈
오영환 · 어기구 · 오영훈
허 영 · 홍기원 · 정태호
서동용 · 양기대 · 최인호
홍익표 · 임호선 · 이장섭
김철민 · 소병철 · 전해숙
김승남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기금 등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공적 연기금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기준 883조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지침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어 비재무적 가치 창출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의무를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 원칙에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추가하는 등 책임투자 원칙 도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타 기금에도 적용토록 하는 법령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기금 사업성과,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연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제6호 신설 및 제82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

제8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금의 사업 성과
2.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3.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및 자산운용지침의 준수 여부
4. 그 밖에 기금운용의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② (생략) ③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u>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u>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u>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 ----- ----- -----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u> ----- ----- ----- -----. 1. <u>기금의 사업 성과</u> 2. <u>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u> 3. <u>기금자산운용의 원칙 및 자산운용지침의 준수 여부</u> 4. <u>그 밖에 기금운용의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u>

② ~ ④ (생 략)	<u>는 사항</u> ② ~ ④ (현행과 같음)
-------------	-------------------------------